##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1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 홍석준·추경호·김상훈

송석준 · 김정재 · 김용판

이헌승 · 강대식 · 배현진

이철규 • 박성중 • 윤재옥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전증여 방식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상속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선호하고 있음. 기업 현장에서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중요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한도를 가업상속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단일화함으로써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업승계 증여세 지원한도를 현행 과세가액 100억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함(안 제30조의6제1항).
- 나. 가업승계 증여세 세율을 10%로 단일화함(안 제30조의6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100억원"을 "500억원"으로,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	
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	
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	
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	
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	
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	
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u>10</u>	
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	-500억원

원을 공제하	하고 .	세율을	100	분	의
10(과세표증	30]	30억원	을	초	과
하는 경우	그 초	스과금이	박 에	대	해
<u>서는 100분</u>	-의 20	<u>0)</u> 으로	하ㅇ	1	증
여세를 부	라한디	·. 다만	·, 가	업	의
승계 후	가업.	의 승	계	당	시
「상속세	및 증	·여세법	٦	제	22
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	수	또	는
최대출자자	에 경	해당하는	= >	자(	가
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	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	들을	증	여
받은 자는	제외	한다)료	드부E	}	증
여받는 경	우에는	= 그러	하지		아
니하다.					

② ~ ⑦ (생 략)

<u>100분의 10</u>
② ~ ⑦ (현행과 같음)